

1

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

◆ (발생사례) 인천 강화도 글램핑 야영장 화재('15.3.)로 5명 사망, 2명 부상
※ 발생 사례가 없을 경우, 언론보도나 국회 지적 내용 등 기재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1)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70%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「건설기술진흥법」상의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으로 의무 되어있음.
- (2) 우리나라 건축공사가 2,000㎡ 이하가 대부분이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있고 건축주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안전시설 기준을 모르거나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시공업자가 안전관리 비용과 시설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.
- (3) 이로 인한 안전 시설비, 교육, 주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함.

□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

- (1) 모든 인·허가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별 안전관리비 요율을 정하여 안전관리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확보.
- (2) 건축 인·허가 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(조직, 담당, 교육, 건축시설, 비상연락체계 등 포함)를 첨부토록 함.
- (3) 소규모 공사의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효과.

2

건축물대장에 안전등급 표기

◆ (발생사례) 인천 강화도 글램핑 야영장 화재('15.3.)로 5명 사망, 2명 부상
※ 발생 사례가 없을 경우, 언론보도나 국회 지적 내용 등 기재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1) 현행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설하고 나서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「초기점검」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평가하거나 국토교통부의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건축물관리법」 등에 따른 안전점검과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평가하지만 이를 다른 내진성능평가나, 환경등급처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700여만 개에 이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.
- (2) 이에 따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「시설물안전법」에 의한 위험시설물인 3종시설물의 선정과 관리를 임의대로 하고 있는 실정임.

□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

- (1) 우선 모든 신축건물부터 준공 후에 반드시 초기점검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등급을 평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.
- (2) 점차 「시설물안전법」상 1,2,3 종 및 건축물 및 「건축물관리법」상의 대상시설물에 확대하여 등급을 평가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.
- (3)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에 모든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력관리로 국가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능.